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59조의2(재정에 관한 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</u> 2. <u>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.</u>
<p>제165조(회계연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.</u> 2. <u>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신 설> 2. <신 설> 3. <신 설> 4. <신 설> 3. <u>1분기: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</u> 4. <u>2분기: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</u> 5. <u>3분기: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</u> 6. <u>4분기: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</u> 7. <u>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.</u> 	<p>제165조(회계연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.</u> 2. <u>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1분기: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</u> 2. <u>2분기: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</u> 3. <u>3분기: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</u> 4. <u>4분기: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</u> 3. <u>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.</u> 4. <삭 제> 5. <삭 제> 6. <삭 제> 7. <삭 제>
<p>제167조(심의 원칙)</p>	<p>제167조(심의 원칙)</p>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예산안·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·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,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·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.</u> 2.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, '총학생회비계좌'의 수입·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. 3. <u>예산안·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</u> 2. <u>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. 단,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,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</u> 4. <u>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신 설> 2. <신 설> 5. <신 설>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·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,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·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.</u> 2.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, '총학생회비계좌'의 수입·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. 3. <u>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</u> 2. <u>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</u> 4. <u>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</u> 2. <u>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</u> 5. <u>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.</u>
<p>제168조(사전심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<u>예산안·결산</u>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 단, 비상대책위원회, '격려기금 계좌', '총학생회비계좌'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 2. 학부·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<u>예산안·결산</u>을 	<p>제168조(사전심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<u>예산안 및 결산</u>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 단, 비상대책위원회, '격려기금 계좌', '총학생회비계좌'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 2. 학부·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<u>예산안 및 결산</u>을 전학대회 심의 전

<p>전학대회 심의 전 <u>기층예산심의회의</u>에 제출한다.</p> <p>3.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<u>제1항</u>에 따라 제출된 <u>예산안·결산</u>을 사전심의한다.</p> <p>4. <u>사전심의를</u>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<u>예산안·결산</u>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<u>거치지 않으며, 보고로 대체한다.</u></p>	<p><u>중앙운영위원회 또는</u> <u>기층예산심의회의</u>에 제출한다.</p> <p>3.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<u>제1항 및</u> <u>제2항</u>에 따라 제출된 <u>예산안 및</u> <u>결산</u>을 사전심의한다.</p> <p>4. <u><삭 제></u></p>
--	--